

서울지방법원

1999. 5. 12. 판결선고	인
1999. 5. 12. 원본영수	

판 결

사 건 98가소979160 손해배상(기)

원 고 강 현 일

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 승 수, 이 상 훈
대한민국

법률상 대리인 법무부장관 박 상 천

소송수행자 이 호 국, 백 우 현

변 론 종 결 1999. 4. 21.

주 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. 8. 15.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1999. 5. 1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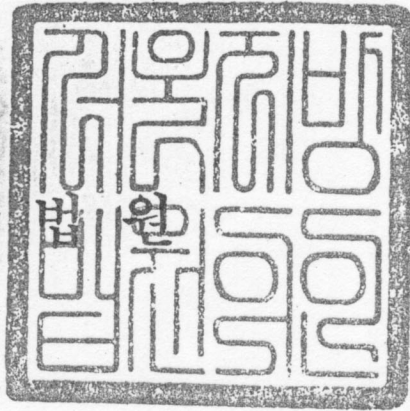
판 사 김 동 국 _____



정 본 입 니 다.

1999. 5. 20

서 울 지 방



민중추진위원회

